무배당 한화신탁제공용 이율보증형 퇴직적립보험

약 관

무배당 한화신탁제공용 이율보증형 퇴직적립보험 약관

제1조 (약관의 목적)

이 약관의 목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약관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29조에 의하여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신탁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일환으로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와(이 약관에서 "회사"라 합니다) 퇴직연금 이율보증형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신탁업자"라 함은 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탁회사를 말합니다.
 - 2. "보험료"라 함은 신탁업자가 계약자로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3. "보험금"이라 함은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계약에서 "규정"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보험기간)

본 계약의 보험기간은 회사의 승낙이 이루어진 때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제4조 (보험세목)

- 이 계약의 보험세목은 다음 각 호의 제도유형별 이율보증형(1, 2, 3, 5년, 기간지정식^{주)})으로 합니다.
- 주) 기간지정식의 경우 확정급여형에만 해당하며, 1년이상 3년이하 일단위 지정
 - 1. 확정급여형
 - 2. 확정기여형
 - 3.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기업형]

제5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이 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는 신탁업자로 합니다.

제6조 (보험료의 납입)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7조 (신탁업자의 수행업무)

- ① 신탁업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한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합니다) 또는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합니다)의 운용지시에 의해 본 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신탁업자는 본 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 (보험회사의 수행업무)

- 1. 보험료의 수령
- 2.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의 지급
-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 (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전문을 통한 전자적 거래시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0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이 약관과 청약서(청약서 부본<원본의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전달하고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청약서(청약서 부본<원본의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문서>)의 경우 업무협약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2조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 ① 회사는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수익자에게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가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율보증형 적용이율+1%를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3조 (해지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① 해지환급금은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 또는 보험세목이 변경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하여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 2.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4.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 5.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 ③ 중도해지이율은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80%」로 적용합니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5조 (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

회사는 본 보험계약을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합니다.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적립금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제16조 (단위보험)

- ① 이 계약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별로 설정되는 것으로 하며,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합니다.
- ②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 중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을 설정하며,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에 회사가 결정한 각 단위보험별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 ③ 계약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으로의 변경 요청이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기간지정식 단위보험의 경우는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이율보증기간

- 의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별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7조 (적용이율)

회사는 매월 1일에 적용이율을 결정하며, 단위보험 설정일에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합니다.

- 1. 회사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산출하고,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단,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2. 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지방채 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보험세목별로 아래와 같이 산출합니다.

[1년 이율보증형, 기간지정식(1년이상~1년6개월이하 일단위)]

- 지표금리(%) = 0.7×A1 + 0.3×A2
 - A1: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 A2: 회사채(1년만기, 무보증, AA⁰) 수익률의 평균값

[2년 이율보증형, 기간지정식(1년6개월초과~2년6개월이하 일단위)]

- 지표금리(%) = 0.7×A1 + 0.3×A2
 - A1: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 A2: 회사채(2년만기, 무보증, AA⁰) 수익률의 평균값

[3년 이율보증형, 기간지정식(2년6개월초과~3년이하 일단위)]

- 지표금리(%) = 0.7×A1 + 0.3×A2
 - A1: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 A2: 회사채(3 년만기, 무보증, AA⁰) 수익률의 평균값

[5년 이율보증형]

- 지표금리(%) = 0.7×A1 + 0.3×A2
 - A1: 국고채(5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 A2: 지방채(5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 국고채 수익률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또는 5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
 - 회사채 수익률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1년, 2년 또는 3년만기 무보증회 사채(AA⁰)의 '채권평가회사의 시가평가 기준수익률 평균(민평평균)'
 - 지방채수익률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5년만기 지역개발공채증권의 '채 권평가회사의 시가평가 기준수익률 평균(민평평균)'
 - 평균값은 매월 1일부터 과거로 기산해서 6번째 영업일에서 15번째 영업일까지 10영 업일 동안의 해당 수익률을 산술 평균
- 3. 세부적인 적용이율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운용지침을 따릅니다.

제18조 (계약의 승계)

계약자는 모든 권리의무를 다른 신탁업자에게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약관의 변경)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신탁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신탁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30일전까지 신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신탁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신탁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신탁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신탁업자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신탁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신탁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⑥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신탁업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 ① 이 약관의 조항해석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협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23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단,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 ① 2014년 3월 31일 이전에 이율보증형 보험을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이미 가입한 이율보증형 단위보험별 보증기간이 끝날때까지 기존 약관의 해지환급금 산출기준(시장가격조정률 등)을 따릅니다.
- ② 2015년 10월 12일 이전에 이율보증형 상품에 가입하여 해당 상품을 유지하는 경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2%로 합니다.